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명단공개 체불 사업주 요건 확대 및
반의사불벌 배제 확대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3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명단공개 체불 사업주 요건 확대 및 반의사불벌 배제 확대	3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3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2회 이상 유죄 확정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수가 적어 그 결과 제도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현행법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추가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한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라면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을 한 번이라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제1항, 제109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명단공개 체불 사업주 요건 확대 및 반의사불벌 배제 확대(안 제43조의2 및 제109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의 요건 중 유죄 확정과 관련된 부분을 현행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에서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안 제43조의2).

또한 개정안은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요건인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체불하는 경우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임(안 제10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	① ----- ----- ----- ----- ----- -----

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제109조(벌칙) ① (생략)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유죄가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시

러하지 아니하다.

-----.

나. 검토의견

채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채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어 채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채불을 예방하고, 상습적·악의적 채불사업주를 제재하여 채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음.¹⁾

현행법 제43조의2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채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 제109조제2항은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을 규정하며,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채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임금등을 채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Ⅲ」, 106쪽

2) 참고로,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금채불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며 법 제107조제2항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엄격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요건으로 인해 대상이 적고,³⁾ 2024년 기준 반의사불벌 처리비율이 46.6%로,⁴⁾ 사건 종결 전 청산 시 반의사불벌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바 체불사업주의 실질적 부담이 미미하여 상습적 체불 행태가 발생하는 등⁵⁾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체불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후 재체불행위의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부담 강화를 통한 간접적 임금체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입법의 의의가 있음.

특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수는 5년 평균 350명이나 개정안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수는 41.9% 증가한 496명으로 추정되는바, 임금체불 행위 제재를 통한 억제 효과의 제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명단 공표와 관련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명단공표를 규정하고 있음.

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수는 5년 평균 350명이라고 함(2026.1.7. 제출자료)

4)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2025.9.2.

5)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2025.9.2.

[명단공표 관련 유사 입법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 제1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다만, 개정안의 반의사불벌 배제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안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

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의 반의사불벌죄는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형사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합의에 대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체불청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임.⁶⁾ 반의사불벌 제도는 형사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체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자의 체불 조기청산 유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의의가 있음.

이때 개정안은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이후 재체불을 하면 모든 체불행위의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반의사불벌 제도의 조기 체불 청산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명단 공개 이후 재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배제 확대는 재체불 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규정을 통한 청산 유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6) 체불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적 권리분쟁이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민사절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시간적·비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체불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임. 그런데 임금체불을 예외 없이 처벌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합의나 민사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여지가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은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촉진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임. (송승은, (2023).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0(1), 327-358. 참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